몽골 정부의 국가발전전략: 산업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1. 서론
2. 몽골 산업발전 정책: 기본 방향 및 핵심 내용
3. 몽골 산업발전 정책의 시행
4. 몽골 산업발전 정책과 시행 그리고 한-몽 산업협력 방향
5. 결론

1. 서론

몽골 국회는 2015년 6월에 몽골의 「국가산업정책」을 제정하였다. 본 정책은 몽골 최초의 산업발전 정책이다.

「국가산업정책」을 통하여 몽골 정부는 제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광업과 농축업 분야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산업 다변화를 이루는 식으로 몽골의 안전적인 발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정책이 몽골 정부 국가발전전략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는 「국가산업정책」의 내용이 2016년 2월에 제정된 「몽골국 안전적 개발 개념-2030」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1] 「몽골국 안전적 개발 개념-2030」이 앞으로 몽골 정부 국가발전전략으로 적용될 것이며 본 개념이 제정되므로써 그동안 몽골 정부 국가발전전략으로 적용되었던 1996년 「몽골국 개발 개념」과 2008년 「몽골국 새천년 목표에 기반한 국가개발 종합정책(2007-2021)」이 무효화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몽골의 「국가산업정책」은 몽골 정부의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몽골 정부는 현재 「국가산업정책」 범위 이내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기획하고 조치들을 세우고 있으며 이들을 국내·외 투자 및 원조로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2]

이것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광업 및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국과 몽골

[1] Монгол Улсын Их Хурлын 2016 оны 19 дүгээр тогтоол, Монгол Улсын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л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2030 батлах тухай, 2.1.3.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лбар.
[2] Төрөөс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ыг хэрэгжүүлэх дунд хугацааны стратеги(2015-2020 он), 6.1.1.

의 산업협력이[3] 제조업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양국 간의 산업협력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연구는 몽골의「국가산업정책」과 이 정책으로 인하여 한국과 몽골 양국의 산업협력이 어떻게 확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2부에서 몽골 산업발전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 제3부에서 그 시행 상태를 살펴보고, 제4부에서 몽골의 산업발전 정책 및 그 시행이 한-몽 산업협력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는 제5부에서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린다.

2. 몽골 산업발전 정책: 기본 방향 및 핵심 내용

몽골이 2009년과 2014년에 외환 위기에 당면했고, 이것으로 인하여 몽골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4] 외환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몽골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몽골 산업이 다변화되지 않고 제조업 분야가 발달되지 않은 것과 관련지어 봤다.[5]

따라서 2015년 1월 29일에 츠.앨백도르즈 몽골 대통령이「산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정부에 지시를 내리는 것에 관한 대통령령」을 내렸다. 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산업화와 관련되어 제정된 법령과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몽골의 경제자원과 잠재성에 기초한 단·중·장기적으로 시행할 산업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몽골 대통령령에 따라 몽골 산업부[6]가「국가산업정책」안을 수립했고 이 정책안을 몽골 국회가 2015년 6월 19일에 통과시켰다.

---

[3] 1994-2015년 기간동안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가 주로 광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업종별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 2016년 5월 12일).

[4]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шинжилгээ, судалгааны төв,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ямрал болсон уу, эсвэл болох уу?" Цуврал#2, 2015 оны 3 сарын 29-ний өдөр, http://mearc.mn/r/26 (검색일: 2016년 4월 2일).

[5] "Эдийн засгийн хүндрэлийг даван туулах арга хэмжээний тухай", УИХ-ын тогтоолын төсөл, 2014 оны 12 сар, 1-2 тал.

[6] 몽골 산업부가 2015년 1월에 설립되었다. 몽골 최초의 산업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이다. 그전에 몽골에는 산업 문제 담당 별도의 부처가 없었다. 산업 문제가 생산농업부, 경제개발부, 노동부, 광물청 등 여러 개의 부처에서 각각 처리되었다.

몽골 「국가산업정책」에 본 정책의 목적을 "몽골의 제조업 분야를 선진 기계장비와 고도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몽골의 안전적인 발전을 확보하는 우선순위 분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 본 정책에 제조업 분야에 광업 채굴 및 제련 부문 외의 제조업 부문들이 해당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본 정책을 3개의 단계로 시행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들 단계에 관하여 살펴보면 1단계(2015-2020년)에서 원료 가공 및 수입대체산업을 발전시키고, 2단계(2020-2025년)에서 수출지향산업을 발전시키며 3단계(2025-2030년)에서는 지식에 기초한 수출지향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표 1〉 참조)

〈표 1〉 몽골 국가산업정책의 시행 단계

	단계	내용
1.	I 단계(2015-2020 년)	국내 생산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고 기계장비와 기술을 현지화시키며 수출지향 및 수입대체 산업정책을 시행한다.
2.	II 단계(2020-2025 년)	수출이 주도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고도기술과 기계장비 및 화학 생산을 개발시킨다.
3.	III 단계(2025-2030 년)	지식에 기초한 산업을 개발시키고 서비스와 기술 수출을 지지하여 개발시킨다.

출처: 「국가산업정책」, 5. 정책시행 단계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그리고 본 정책을 총 8개의 목표를 통하여 시행할 것으로 명시하였다. (〈표 2〉 참조)

〈표 2〉 몽골 국가산업정책 시행 관련 목표들

	국가산업정책 시행 관련 목표들
1.	제조업 분야의 법적 환경을 개선시키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호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
2.	산업개발지대를 확정하고 '몽골의 산업종합기획과 약도'를 생태계, 인구 밀집도와 정착도, 원료 자원 및 인프라 정책과 연관지어 작성하는 것
3.	제조업 우선순위 분야들을 확정하고, 클러스터, 자유지역, 생산기술단지와 그 운송·로지스틱 네트워크를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개발하는 것
4.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과학과 민간 부문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
5.	선진 기계장비, 고도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경제사회적 효과가 있는 가공, 재가공과 창의적인 생산을 투자정책과 재정정책으로 지지하는 것
6.	창의적인 생산을 지지하여 개발시키는 것
7.	제조업 분야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능력 개선을 지원하는 것
8.	무역과 서비스업 분야가 개발되도록 호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수출을 다변화시키는 것

출처: 「국가산업정책」, 4.정책 목표 및 시행 방향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3. 몽골 산업발전 정책의 시행

「국가산업정책」의 1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몽골 국회가 2015년 10월 5일에 「국가산업정책 시행 중기전략(2015-2020년)」을 제정하였다. (〈그림 1〉 참조)

〈그림 1〉 「국가산업정책 시행 중기전략(2015-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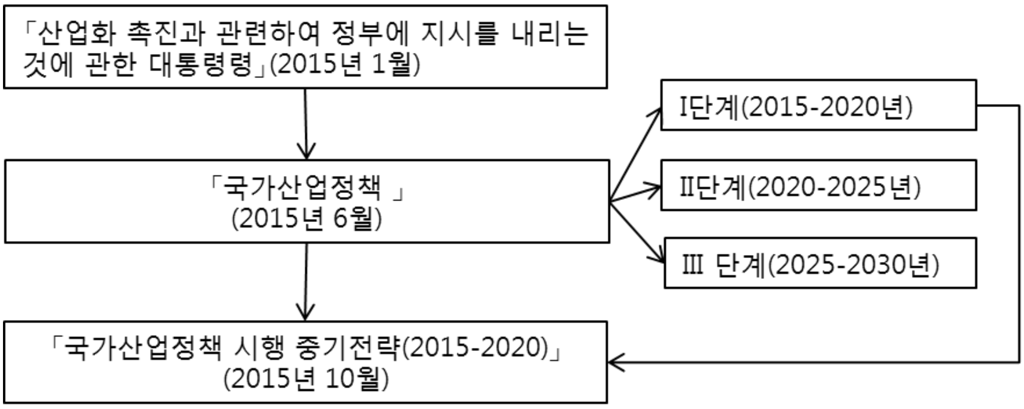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본 전략에는 몽골 정부가 「국가산업정책」 시행 1단계 즉 2015-2020년에서 시행할 6개의 목표[7]와 이들을 시행하는 조치들을 정의하였다. (〈표 3〉 참조)

〈표 3〉 여기에 배치됨.

「국가산업정책 시행 중기전략(2015-2020년)」의 목표들, 이들을 시행할 조치들과 시행 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목표 1</u>: 생산과 무역을 지지하고, 생산과 무역에 대한 호적인 법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 (목표 시행 조치들: 생산과 무역을 지지하는 법률을 새로이 작성하고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것; 무역에 대한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관세 및 비관세 조정을 국제조약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 등)

7 「국가산업정책」의 총 8개의 목표 범위 이내에서 정의하였다.

목표 1의 시행:

- 목표 1의 시행과 관련하여 몽골 국회가 2015년 7월에 「생산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본 법의 목적을 "경쟁력이 있고, 가치가 부가된 수출지향 및 수입대체적인 제품의 생산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있다"고 정의하였다. 본 법에 몽골 정부가 대출이자율 차액 지불, 연구개발비 지원과 팩토링 서비스 제공 등 3가지 방식으로 국내 생산을 지원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본 법에 상기 지원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하는 목적으로 '생산개발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명시하였다.

- 그 다음으로 2015년 7월에 「정부와 지방정부 소유자금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법」을 수정하였다. 본 법에 "품질과 표준 요구기준을 충족시킨 상품을 국내 생산업체들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입찰에서 외국산 상품을 공급하는 자를 선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긴 정부와 지방정부 기관의 예산책임자, 상무이사와 이사에게 최저 임금의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와 "정부가 국내 생산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질과 표준 요구기준을 충족시킨 상품 목록을 작성한다"는 조항들을 추가하였다.

  - 또는 만약 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를 어기고 수입산 상품을 구입하면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고, 해임 후 10년 동안 복직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에 관해서도 고려하고 있다.[8]

- 상기법에 따라 몽골 정부가 「국내 생산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질과 표준 요구기준을 충족시킨 상품 목록」 336호 정부령을 내렸다. 본 정부령에 몽골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질 요구기준을 충족시킨 12개 상품군의 101가지 상품을 포함시켰다.

  ※ 12개의 상품군에 ①모든 종류의 출판물, ②가죽으로 만든 제품, ③펠트와 펠트로 만든 제품, ④방직물, ⑤털이 있는 의상, ⑥울과 캐시미어 제품, ⑦목재와 목재로 만든 제품, ⑧도로건설자재와 건축자재, ⑨강철로 만든 물건과 제품, ⑩식품, ⑪포장물과 ⑫기타가 포함된다.

- 또한 몽골 국회가 2015년 7월에 「수입품 관세율을 제정하는 것에 관하여」 74호 국회령을 제정하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30개의 상품군에 해당되는 370가지 상품의 관세율을 20 퍼센트까지 인상시킬 권리를 몽골 정부에 부여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몽골 정부가 2015년 8월에 「일부 수입 상품의 관세율」 332호 정

[8] "Д.Баттогтох: Үйлдвэржилтийг цогцоор нь дэмжихээр ажиллаж байна", 2015 оны 11 сарын 2-ны өдөр, http://mi.gov.mn/578.html (검색일: 2016년 3월 9일).

부령을 내리고 우선적으로 30개의 상품군 중에서 5개의 상품군에 해당되는 13가지 상품의 수입관세율을 15-20 퍼센트까지 인상시켰다.

※ 5개의 상품군에 ①, ②모든 종류의 육류와 육류 제품, ③꿀, ④모든 종류의 시멘트와 ⑤제조된지 1년 미만의 새 전기버스가 포함된다.

- 또는 2016년 3월에 「일부 수입 상품의 관세율」 185호 정부령을 내리고 30개의 상품군 중에서 14개의 상품군에 해당되는 48가지 상품의 수입관세율을 15-20 퍼센트까지 인상시켰다.

  ※ 14개의 상품군에 ①유제품, ②채소, ③아이스크림, 얼음, ④건축자재(문짝, 창문, 플라스틱 제품), ⑤건축 패널, ⑥출판물, ⑦양털로 만든 제품, ⑧ 펠트와 양털로 만든 제품, ⑨직물 자재, ⑩자루, ⑪작업 신발, ⑫건축 블록, 울타리, 건축용 솜, ⑬벽돌과 ⑭목재 가구가 포함된다.

- 또는 몽골 국회가 2015년 7월에 「부가가치세법(개정법)」을 수정하여 "광물, 울, 캐시미어와 가죽을 원료 형태로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가공하고 최종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와 "국내에서 가공된 원료를 구입한 기업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들을 넣었다.

- 이들 외에 「정부 특별기금법」, 「기술이전법」 및 「몽골국 외교여권과 귀국 증명서 발급, 소유와 보관 규정」 내용을 수정·변경했고 「무역법」안과 「덤핑법」안을 수립하고 현재 의논 중에 있다. (〈표 4〉 참조)

〈표 4〉 여기에 배치됨.

<u>목표 2</u>: 산업개발 종합지대와 그 공간 기준을 정의하고 공장들의 위치와 용량을 확정하는 것 (목표 시행 조치들: '산업개발 종합지대'를 확정하고 제정하게 하는 것; '산업개발 종합지대'와 연관지어 공장들의 위치와 용량을 확정하는 것 등)

<u>목표 2의 시행</u>:

- 목표 2 범위 이내에서 몽골 산업부가 몽골 영토를 총 5개의 지대, 12개의 부지대와 2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이들 지대에서 제조업 분야를 개발할 종합 기획과 약도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림 2〉 참조) 이것은 몽골내 지역들의 자원과 잠재성에 기초하여 어느 지역에서 경공업을 개발하고 어느 지역에서 중공업을 개발하는지에 관한 산업지대 개발 기획 및 약도이다.

  - 5개의 지대: 서부 지대, 항가이 지대, 중부 지대, 동부 지대, 고비 지대

- 12개의 부지대: 바양울기 부지대, 오브스-호브드 부지대, 고비알타이 부지대, 자브항-태스 부지대, 항가이-후브스굴 부지대, 움누드 항가이 부지대, 오르홍-셀렝개 부지대, 울란바타르 부지대, 헨티 부지대, 도르노드-수흐바타르 부지대, 고미숨베르부지대, 갈빙 고비 부지대
- 27개의 구역: 5개의 지대를 12개의 부지대로 나누고, 12개의 부지대를 다시 27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음. (〈부록 1〉 참조)

※ 5:12:27 산업개발 종합지대 (저자 명칭)

〈그림 2〉 산업개발 종합지대(초안)

자료: 몽골 산업부, 산업 분야 개발 정책, 기획과 조정 프로그램, http://industry.mi.gov.mn/(검색일: 2016년 5월 3일).

- 본 기획과 약도 초안이 현재 논의 단계에 있다.[9]

목표 3: 지대 제조업 우선순위 분야들을 확정하여 제조업을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 클러스터, 자유지역과 생산기술단지를 그 인프라와 함께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개발하는 것.
(목표 시행 조치들: 철과 구리, 이들로 만든 제품 및 코킹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석유가공, 구리 용해와 금 제련 공장들을 건설하는 일을 개시하는 것; 제조업 분야 운송과 로지스틱 네트워크를 개발시키는 것; 자유지역, 생산기술단지, 과학기술단지와 중공업 단지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사업들을 지지하는 것 등)

[9] 몽골산업부 산업개발정책 조정부서 수석 전문가 스.남질마와 2016년 5월 5일에 한 전화 인터뷰.

<u>**목표 3의 시행**</u>:

- 목표 3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선, 동부 지대에서 정유공장과 구리용해 공장, 중부 지대에서 제철공장을 각각 건설하기로 하였다.
    - 정유공장은 헨티道 보르-운두르郡, 구리용해 공장은 헨티道 보르-운두르郡, 제철 공장은 다르항올道 다르항郡에서 건설하기로 하였다.

- 제조업 분야 운송·로지스틱 네트워크 개발과 관련하여 제조업 분야 범위 이내에서 개발할 인프라 기획과 약도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에 도로와 철도가 들어갔다. (〈그림 3〉 참조)

〈그림 3〉 제조업 분야 범위 이내에서 개발할 인프라(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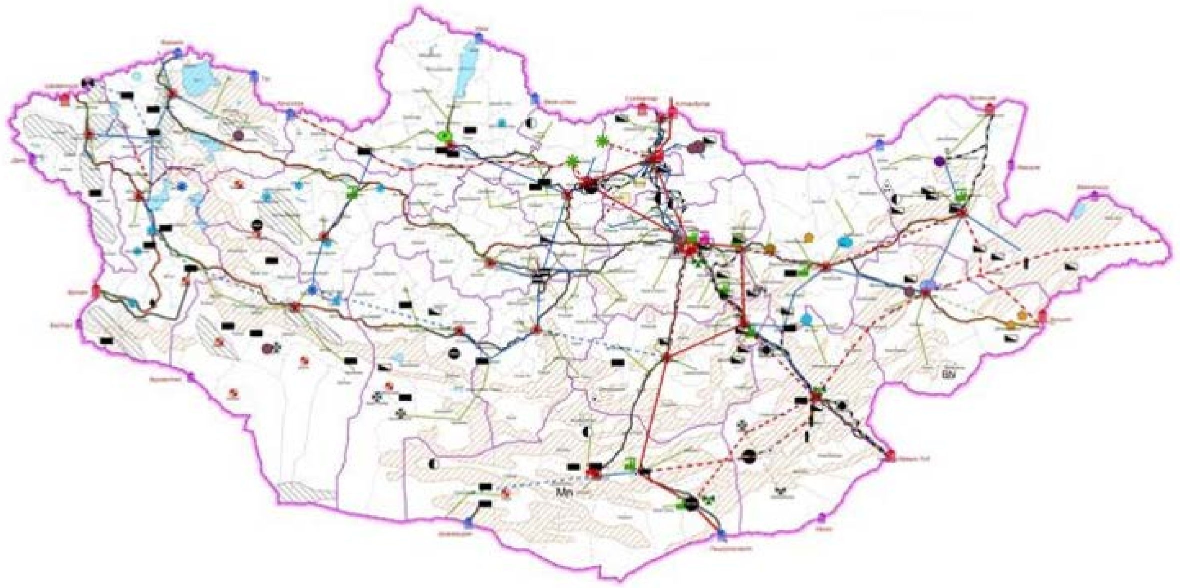

자료: 몽골 산업부, 산업 분야 개발 정책, 기획과 조정 프로그램, http://industry.mi.gov.mn/(검색일: 2016년 5월 3일).

- 본 초안은 현재 제정되지 않았고 논의 단계에 있다.[10]

- 또는 2016년 2월부터 에르데네트市와 다르항市의 생산기술단지 운영을 개시하고,[11] 에르데네트市 생산기술단지에서 인프라와 제조업 분야 투자포럼을 개최하는 등 조치들을

---

[10] 몽골산업부 산업개발정책 조정부서 수석 전문가 스.남질마와 2016년 5월 5일에 한 전화 인터뷰.

[11] “Орхон, Дархан-Уул аймгийн үйлдвэрлэл, технологийн паркийн удирдлагуудтай гэрээнд гарын үсэг зурлаа”, 2015 оны 2 сарын 5-ны өдөр, http://mi.gov.mn/250.html (검색일: 2016년 5월 2일).

취하고 있다.[12]

목표 4: 선진 기계장비와 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가공 및 재가공 공장들을 재정정책으로 지지하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 (목표 시행 조치들: 정부, 과학기관, 교육기관과 기업들의 협력을 지지하는 것; 수출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제품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 등)

목표 4의 시행:

- 목표 4 시행 차원에서 2016년 2월 24일에 산업부와 몽골과학아카데미가 공동으로 '과학-생산 연계 강화 방안' 세미나를 조직하였다. 본 세미나 때 정부, 과학과 민간 부문 대표로 구성된 국가위원회, 협의회 등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관하여 의논하였다.

- 수출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제품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생산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대출이자율 차액 지불, 연구개발비 지원과 팩토링 서비스 제공 등 3가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13]

목표 5: 지식경영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창의적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능력,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목표 시행 조치들: 국가 역사와 문화가 담긴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등)

목표 5의 시행:

- 본 목표 시행과 관련된 조치들을 아직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14]

목표 6: 제조업 인력 수요에 기반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것. (목표 시행 조치들: 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성하고 능력을 키우는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 등)

목표 6의 시행:

- 목표 6 시행 차원에서 몽골 정부는 현재 일본과 '기술자와 기술 고등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15],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과 기술을 경제에 이전하는 것 관련 공동연구 사업, 교수 교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16]

---

[12] "Эрдэнэт үйлдвэрлэл, технологийн парк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дын чуулган", 2015 оны 10 сарын 10-11-ний өдөр, https://www.youtube.com/watch?v=82OCuIBPI5w (검색일: 2016년 4월 2일).

[13]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х хууль, 1 бүлэг 6.1.2, 2 бүлэг 7.7.

[14] 몽골산업부 경공업 정책조정국 수석 전문가 브.바트채책과 2016년 5월 20일에 한 전화 인터뷰.

[15] Э.Лхамзаяа, "Өөрөө зохион бүтээдэг, шинийг санаачилдаг инженер болоорой", 2016 оны 1 сарын 28-ны өдөр, http://www.meds.gov.mn/post160128 (검색일: 2016년 4월 12일).

[16] Т. Ану, "Массачусетс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институтитэй хамтарна", 2015 оны 5 сарын 15-ны өдөр, http://www.news.mn/content/212472.shtml (검색일: 2016년 4월 9일).

4. 몽골 산업발전 정책과 시행 그리고 한-몽 산업협력 방향

몽골의 산업발전 정책 및 그 시행이 한-몽 산업협력 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4.1. 산업 협력 대상 분야

몽골의 국가산업정책, 그 시행과 연관지어 한국과 몽골 양국은 몽골 제조업 분야에서 몇몇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다.

중공업 부문:

- 중공업 부문에서 한국기업들이 석유, 구리와 철 가공 부문과 관련된 다음의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다.

1. 보르운두르 정유공장 사업: 헨티道 보르운두르郡에서 1년에 2.3~2.6백만 톤 석유를 가공하는 용량의 정유공장과 540킬로미터 길이의 석유 배송관 건설 사업이다. 본 공장을 도르노드道 탐삭 석유광산에 의존하여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 본 공장 건설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입찰을 2016 년 3 월에 공고하였다.[17] 현재 몽골-캐나다 합작 컨소시엄, CPP-MAX 몽골-중국 합작 컨소시엄, 몽골-중국 합작 컨소시엄, ISN 몽골-영국 합작 컨소시엄 4 개의 컨소시엄이 참여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다.

※ 본 공장에서 가공한 석유로 앞으로 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본 사업(단기)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품 제조 사업 등 연계 사업들(중·장기)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정유공장 사업 위치

[17] “Газрын тос боловсруулах үйлдвэрийн төслий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дыг сонгох уралдаанд дөрвөн концсорциум хүсэлтээ ирүүлжээ”, 2016 оны 4 сарын 14-ны өдөр, http://mi.gov.mn/939.html (검색일: 2016년 4월 22일).

자료: "Газрын тос боловсруулах үйлдвэрий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ийг ирэх сард тодруулна", 2016 оны 4 сарын 22-ны өдөр, http://mi.gov.mn/947.html (검색일: 2016년 5월 9일).

2. 보르운두르 구리용해 공장 사업: 헨티道 보르운두르郡에서 구리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공장을 오유톨고이, 차강 소브락과 에르데네트 구리 광산에 의존하여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 본 공장 건설 타당성조사가 현재 수행되고 있고,[18]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나면 입찰을 공고하려고 하고 있다.

※ 본 공장에서 가공한 구리로 앞으로 전자 제품 부속품, 가정용 제품 등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본 사업(단기) 뿐만 아니라 전자 제품 부속품, 가정용 제품 제조 사업 등 연계 사업들(중·장기)에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구리용해 공장 사업 위치

[18]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йд Д.Эрдэнэбат "Сайдын цаг" уулзалтад оролцлоо", 2016 оны 4 сарын 14-ны өдөр, http://www.zasag.mn/news/view/13031#sthash.iGihIHKZ.dpuf (검색일: 2016년 4월 17일).

자료: “Зэсийн баяжмал хайлуулах үйлдвэрийн тухай”, http://www.erdenetnews.mn/?p=4548 (검색일: 2016년 5월 7일).

3. 다르항 제철 공장 사업: 다르항올道 다르항郡에서 제철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공장을 셀렝개道에 있는 투무르테이, 투무르톨고이와 호스트올 3개의 철광 광산에 의존하여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투무르테이 광산에서 한트가이트驛(공장을 지을 곳)까지의 33.4킬로미터 길이의 철도 건설을 끝냈다.
   - 본 공장에서 강철을 제철하고 기계장비, 부속품 등을 생산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본 사업(단기)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 부속품 제조 사업 등 연계 사업들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제철 공장 사업 위치

자료: http://www.mongolia-trips.com/travel-tips/maps-mongolia/administrative-map-mongolia/ (검색일: 2016년 5월 1일)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 상기 3개의 사업이 몽골「국가산업정책」범위 이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공업 분야 사업들이다.

경공업 부문:

경공업 부문에 한국기업들이 몇몇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1.「일부 수입 상품의 관세율」(332호 정부령)에 따라 수입관세율이 인상된 5개 상품군의 13가지 상품 제조 부문
   - 5개의 상품군: ①, ②모든 종류의 육류와 육류 제품, ③꿀, ④모든 종류의 시멘트, ⑤제조된지 1년 미만의 새 전기버스

2.「일부 수입 상품의 관세율」(185호 정부령)에 따라 수입관세율이 인상된 14개의 상품군에 해당되는 48가지 상품 제조 부문
   - 14개의 상품군: ①유제품, ②채소, ③아이스크림, 얼음, ④건축자재(문짝, 창문, 플라스틱 제품), ⑤건축 패널, ⑥출판물, ⑦양털로 만든 제품, ⑧ 펠트와 양털로 만든 제품, ⑨직물 자재, ⑩자루, ⑪작업 신발, ⑫건축 블록, 울타리, 건축용 솜, ⑬벽돌, ⑭목재 가구

3.「수입품 관세율을 제정하는 것에 관하여」(74호 국회령)에 따라 앞으로 수입관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30개 상품군의 309가지 상품 제조 부문[19]
   - 30개의 상품군과 관련하여 〈부록 1〉 참조.

4.「국내 생산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질과 표준 요구기준을 충족시킨 상품 목록」(336호 정부령)에 들어간 12개 상품군의 101가지 상품 제조 부문
   - 12개의 상품군에 ①모든 종류의 출판물, ②가죽으로 만든 제품, ③펠트와 펠트로 만든 제품, ④방직물, ⑤털이 있는 의상, ⑥울과 캐시미어 제품, ⑦목재와 목재로 만든 제품, ⑧도로건설자재와 건축자재, ⑨강철로 만든 물건과 제품, ⑩식품, ⑪포장물, ⑫기타

5. 몽골의 역사, 문화와 전통이 담긴 제품 생산 부문

[19] 총 370가지 상품 중에서「일부 수입 상품의 관세율」(332호 정부령)과「일부 수입 상품의 관세율」(185호 정부령)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들임.

(제조업 분야) 인프라와 운송·로지스틱 부문:

제조업 분야 인프라와 운송·로지스틱 부문에서 한국기업들이 「산업개발 종합지대」(초안)에 따라 5개의 지대, 12개의 부지대와 27개의 구역에 분포하여 개발될 클러스터, 생산기술단지와 자유지역의 onsite와 offisite 인프라 건설과 운송·로지스틱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림 2> 및 <그림 3> 참조)

<표 5> 한-몽 산업협력 대상 부문들

	제조업	협력 대상 사업과 부문들
1.	중공업	헨티道 보르-운두르郡 정유공장 사업 및 연계 사업들
		헨티道 보르-운두르郡 구리용해 공장 및 연계 사업들
		다르항올道 다르항郡 제철공장 및 연계 사업들
2.	경공업	「일부 수입 상품의 관세율」(332호 정부령)에 따라 수입관세율이 인상된 5개 상품군의 13가지 상품 제조 부문
		「일부 수입 상품의 관세율」(185호 정부령)에 따라 수입관세율이 인상된 14개의 상품군에 해당되는 48가지 상품 제조 부문
		「수입품 관세율을 제정하는 것에 관하여」(74호 국회령)에 따라 앞으로 수입관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약 30개 상품군의 309가지 상품 제조 부문
		「국내 생산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질과 표준 요구기준을 충족시킨 상품 목록」(336호 정부령)에 들어간 12개 상품군의 101가지 상품 제조 부문
		몽골의 역사, 문화와 전통이 담긴 제품 생산 부문
3.	(제조업 분야) 인프라와 로지스틱 부문	5:12:27 산업개발 종합지대 클러스터, 생산기술단지와 자유지역의 onsite와 offsite 인프라 및 운송·로지스틱 부문

출처: 저자 작성.

4.2 산업협력 추진 방식

몽골의 「국가산업정책」은 고도 기술과 선진 기계장비에 기초한 생산을 지지하는 데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몽골 정부는 금융 리싱의 법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20] 외국인기업들에게 몽골 제조업 분야에 금융 리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21] 이러한 것은 한국기업들이 몽골 제조업 분야에 금융 리싱 방

[20] Төрөөс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ыг хэрэгжүүлэх дунд хугацааны стратеги(2015-2020 он), Дөрөв. Стратегийн зорилтын хүрээнд хэрэгжүүлэх арга хэмжээ, 4.1.3.

[21] D.Battogtoh, “The Industrial Policy of Mongolia”, Chinese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Association (CIECA) presentation, ?? October 2015.

식으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몽골 국내기업들에게 가장 많이 부족한 것은 기술과 기계장비이다. 예컨대, 칭기스와 사무라이 채권 범위 이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화 촉진 장기·저금리 대출을 받은 국내기업들이 대출의 대부분을 기계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고 있고[22] 이러한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아주 많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업들이 기술과 기계장비 투자 조건으로 몽골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다.

또는 몽골은 「국가산업정책」 범위 이내에서 「기술이전법」을 개정하여 제조업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지지하고 있다.[23] 「기술이전법」 개정으로 몽골산업부와 교육문화과학부가 공동으로 몽골국립대학교, 농업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등 기술수준평가 기관들에게 제조업 분야 기술 평가를 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몽골 제조업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기업들이 기술 라이센싱 방식으로 투자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몽골은 기술과 기계장비를 몽골 여건에 맞추어 현지화시키며 활용하는 방법으로 제조업 분야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다.[24] 이에 따라 한국은 몽골측과 한국 기술을 현지화시키는 R&D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다. 한국의 기술과 기계장비를 몽골에 현지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제조업 기술과 기계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

또한 몽골이 「국가산업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마케팅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몽골 국내기업들이 예컨대, 울, 캐시미어 제품을 생산하고 외국에 판매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팔아야 할지를 잘 모르는 등 마케팅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몽골에서 '진칭(隊商을 하는 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국내기업들의 제품을 외국 시장에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사업이며 offline to online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이다.[25]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몽골에서 생산되고 있고 앞으로 생산될 제품을 외국 시장에 홍보하고 판매하는 측면(마케팅 계약 방식으로)에서 협

---

file:///C:/Users/Boroo/Downloads/battogtokh_taiwan_2015.05.27%20(4).pdf (검색일: 2016년 3월 19일).

22 "Чингис бонд ба үйлдвэржилт 2,3", https://www.youtube.com/watch?v=clubUmti6zY (검색일: 2015년 5월 8일).

23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х хууль, 1 бүлэг 6.1.2, 2 бүлэг 7.7.

24 〈표 1〉 몽골 국가산업정책의 시행 단계 참조.

25 Ч.Болор, "Монгол Жинчин брэнд бий болгоё", 2015 оны 5 сарын 4-ний өдөр, http://www.news.mn/r/208797 (검색일: 2016년 5월 1일).

력할 수 있다. 이 방향으로 몽골 제조업 분야에 진출하면 선점자의 우위를 누릴 수 있다.

〈표 6〉 한-몽 산업협력 방식

	제조업 분야 협력 가능한 방식들
1.	금융 리싱
2.	기술 라이센싱
3.	한국 기술-기계장비 현지화 R&D 사업
4.	제조업 분야 제품 해외 마케팅 사업(마케팅 계약)

출처: 저자 작성.

4.3 산업협력 지지 차원의 사업

한국 정부는 그 동안(1987-2015년) 한국과 몽골 양국 관계 및 경제협력을 지지할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과 글로벌 코리아 장학사업(GKS) 범위 이내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26]

몽골 제조업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지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이들 사업을 몽골 제조업 분야와 관련 있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몽골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국가산업정책」시행 소프웨어 측면에 충분한 예산을 낼 여건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ODA, KSP와 GKS 사업들이 양국 제조업 분야 협력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예컨대, ODA 무상원조 범위 이내에서 한국이 제조업 분야 기계장비 공여, 특정 사업 추진, 생산개발기금에 기부금 기부(공여), 전문가 파견 및 초청(기술 협력), 유상원조 범위 이내에서 클러스터, 생산기술단지와 자유지역의 onsite와 offsite 인프라 건설사업, 중경공업 부문 공장 건설 사업들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할 수 있다.

- KSP 사업 범위 이내에서 제조업 분야 개발 관련 자문 제공, 몽골 제조업 분야 정책 입안자들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정책자문), 한국의 중공업 개발 사례와 중경공업을 클러스터로 개발한 사례에 기초한 모듈화 사업(경제발전경험 공

---

[26] KOICA, 협력단 실적 통계, http://stat.koica.go.kr:8077/komis/jsptemp/ps/stat_index.jsp (검색일: 2016년 4월 7일); Korea ODA, 한국의 ODA 지원현황,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asia/Mongolia.jsp (검색일: 2016년 4월 7일); KDI, "몽골 KSP 성과 추적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안)", 2015년 3월, 1쪽; KSP, http://www.ksp.go.kr/kr/publication/joint.jsp?sage=&stem=&syear=&stype=TIT&skey=%EB%AA%BD%EA%B3%A8 (검색일: 2016년 4월 8일); NIIED, GKS장학사업-기획관리부 유학지원단 담당자 제공 자료, 2016년 4월 17일.

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몽골은 특히 한국의 중공업 분야 개발 경험으로부터 배울 의향이 많다. 또한 몽골 산업부는「국가산업정책」수립 과정에 한국의 사업가(entreprenuer),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 개발 경험을 유심히 살펴봤다.[27]

- 또한 GKS를 추진할 때 제조업 분야 기술자와 전문가 양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표 7〉 참조)

〈표 7〉 여기에 배치됨.

몽골과의 산업협력을 지지하는 차원의 이들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한국은 한국기업들이 몽골 제조업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사업들이 단기적이기 보다 장기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한-몽 산업협력의 튼튼한 바탕이 될 수 있다.

4.4 산업협력 알선 기관

한국의 코트라는 2013년 7월에 몽골에서 코트라 울란바타르를 설립하였다. 코트라 울란바타르는 설립 이후 주로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몽골에서 바이어를 구하고 몽골 바이어들이 한국기업들과 연결되며 한국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로 한국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 왔다.

- 예컨대, 2014년에 한국에서 개최된 20개의 엑스포에 몽골 바이어들을 참여시키는 활동을 했고, 2016년에 14개의 엑스포에 몽골 바이어들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28] 그리고 2016년 5월 기준으로 28개의 한국기업의 수출 제안을 몽골 바이들에게 제시하고 있고, 8개의 한국기업에게 몽골 고객들을 알선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29]

---

[27] 드.바트토그토흐 몽골산업부 전략기획국 국장, 몽골 진출환경 세미나, 2016년 3월 25일, 리츠칼튼서울.

[28] KOTPA Улаанбаатар, БНСУ-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үзэсгэлэн, http://www.kotra.mn/kbcloc/KLMIUI030M.html?DOMAIN_NO=138&LEFT_MENU_CD=50&MENU_ID=50&TOP_MENU_CD=38&MENU_TYPE=D&TOP_MENU_NM=%D2%AE%D0%B7%D1%8D%D1%81%D0%B3%D1%8D%D0%BB%D1%8D%D0%BD&LEFT_MENU_NM=%D0%91%D0%9D%D0%A1%D0%A3-%D0%B4%20%D0%B7%D0%BE%D1%85%D0%B8%D0%BE%D0%BD%20%D0%B1%D0%B0%D0%B9%D0%B3%D1%83%D1%83%D0%BB%D0%B0%D1%85&MODE=L (검색일: 2016년 5월 28일).

[29] KOTPA Улаанбаатар, Экспортын санал, Түншийн санал, http://www.kotra.mn/kbcloc/KLMIUI030M.html?DOMAIN_NO=138&LEFT_MENU_CD=51&MENU_ID=51&TOP_MENU_CD=48&MENU_TYPE=D&TOP_MENU_NM=%D2%AE%D0%B9%D0%BB%D1%87%D0

코트라는 수출 촉진 활동과 함께 한국 중소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지국 투자환경 및 투자기회 관련 조사 수행, 이 관련 정보 제공, 현지국 기업들과 알선 등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이 주요 업무인 기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트라 울란바타르는 몽골 산업정책과 제조업 분야 투자기회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고 최신의 업데이트된 자료들을 한국기업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제조업 분야 몽골 기업들과 연결시켜 주는 등 한국기업들이 몽골 제조업 분야 투자기회를 적절한 시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즉 몽골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몽골은 2015년부터 제조업 분야를 최우선 산업분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도 앞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코트라 울란바타르가 중간에서 조정 및 알선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몽골 산업발전 정책 및 그 시행으로 인한 한-몽 산업협력 방향에 관하여 살펴봤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로, 한-몽 산업협력이 중경공업 부문, 제조업 분야 관련 인프라 및 운송·로지스틱 부문과 문화산업 부문에서 추진될 수 있다. 둘째로, 한-몽 산업협력이 금융 리싱, 기술 라이센싱, 기술-기계장비 현지화 R&D 활동과 마케팅 계약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 셋째로, 한국이 몽골과 산업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ODA, KSP와 GSP 사업을 제조업 분야와 관련지어 추진할 수 있다. 넷째로, 한국이 몽골과 산업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코트라 울란바타르 같은 기관의 알선 역할이 필요하다.

단, 한국과 몽골 양국은 몽골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에 관하여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한국기업들이 몽골 제조업 분야에서 어떤 부문에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둘째로, 몽골 제조업 분야에서 어떤 부문에 정확하게 어떤 기술과 기계장비가 필요한지, 셋째로, 몽골 제조업 분야 특정 부문

%B8%D0%BB%D0%B3%D1%8D%D1%8D&LEFT_MENU_NM=%D0%AD%D0%BA%D1%81%D0%BF%D0%BE%D1%80%D1%82%D1%8B%D0%BD%20%D1%81%D0%B0%D0%BD%D0%B0%D0%BB&MODE=L (검색일: 2016년 5월 26일).

공급가치사슬의 어느 부분에서 몽골의 어떤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몽골의 산업발전 정책 범위 이내에서 양국 산업협력이 확대됨으로써 첫째로, 한국기업들이 몽골에서의 투자 기회를 활용하여 사업 범위를 넓힐 수 있고, 또는 한국기업들이 유라시아 지역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크로드 엑스프레스 사업이 실행될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다. 예컨대, 몽골 정부는 동부 지역에서 중공업 공장들을 건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GTI 사업 철도노선에 들어간 철도노선이 건설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또는 몽골이 제조업 분야를 몽골의 여러 개의 산업지대(5:12:27)에 분포한 상태로 인프라 및 운송·로지스틱 네트워크와 함께 개발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몽골 학자 드.슈르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크로드 엑스프레스를 몽골과 관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4개의 대안을 제안했었으며 이들의 일부는 산업지대 인프라와 운송·로지스틱 네트워크에 해당되고 있다.

셋째로, 한국과 몽골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실행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몽골 정부가 「국가산업정책」에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제조업을 개발하고 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을 명시하였다.[30]

넷째로, 몽골측에 한국의 투자에 의하여 제조업 분야를 개발시키는 여건이 마련되어 몽골 산업다변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 몇 개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로, 본 연구는 오로지 몽골「국가산업정책」 측면에서, 또는 몽골측 수요 측면에서 한국과 몽골 양국의 산업협력 확대 방향을 살펴봤다. 본 연구는 한국측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한국측의 이해관계를 감안하는 식으로 본 연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국가산업정책」 범위 이내에서 한국과 몽골의 산업협력 방향을 4개의 측면에서 살펴봤다. 이 외의 측면에서 살펴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4개의 측면에서 양국 산업협력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못했

[30] Төрөөс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ыг хэрэгжүүлэх дунд хугацааны стратеги(2015-2020 он), 4.2.8.2.

으며 이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몽골어 자료〉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йд Д.Эрдэнэбат "Сайдын цаг" уулзалтад оролцлоо"", 2016 оны 4 сарын 14-ны өдөр, http://www.zasag.mn/news/view/13031#sthash.iGihIHKZ.dpuf.

"Газрын тос боловсруулах үйлдвэрийн төслий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дыг сонгох уралдаанд дөрвөн концсорциум хүсэлтээ ирүүлжээ", 2016 оны 4 сарын 14-ны өдөр, http://mi.gov.mn/939.html.

"Д.Баттогтох: Үйлдвэржилтийг цогцоор нь дэмжихээр ажиллаж байна", 2015 оны 11 сарын 2-ны өдөр, http://mi.gov.mn/578.html.

Дотоодын үйлдвэрээс худалдан авах чанар, стандартын шаардлага хангасан барааны жагсаалт –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5 оны 336 дугаар тогтоол, 2015.08.17[336호 정부령-「국내 생산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질과 표준 요구기준을 충족시킨 상품 목록」].

"Д.Эрдэнэбат: Үйлдвэрлэлийг хөгжүүлэх сангаар дамжуулан үндэсний үйлдвэрлэгчдээ дэмжинэ", 2015 оны 7 сарын 15-ны өдөр, http://mi.gov.mn/653.html.

Засгийн газрын тусгай сангийн тухай хууль, 2015.07.09[「정부 특별기금법」, 2015.07.09].

Импортын барааны гаа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вь, хэмжээг батлах тухай-УИХ-ын 74 дүгээр тогтоол, 2015.07.09[74호 국회령-「수입품 관세율을 제정하는 것에 관하여」, 2015.07.09].

Импортын зарим барааны гаа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вь, хэмжээ-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5 оны 332 дугаар тогтоол, 2015.08.17[332호 정부령-「일부 수입 상품의 관세율」, 2015.08.17].

Импортын зарим барааны гаа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вь, хэмжээ батлах тухай УИХ-ын 17 дугаар тогтоол, 2016.02.04[17호 국회령-「수입품 관세율을 제정하는 것에 관하여」, 2016.02.04].

Импортын зарим барааны гаал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вь, хэмжээ-Засгийн газрын 2016 оны 185 дугаар тогтоол, 2016.03.28[185호 정부령-「일부 수입 상품의 관세율」, 2016.03.28].

КОТРА Улаанбаатар, БНСУ-д зохион байгуулах үзэсгэлэн, Экспортын санал, Түншийн санал, http://www.kotra.mn/

Монгол Улсын дипломат, албан паспорт, буцах үнэмлэх олгох, эзэмших, хадгалах журам- ЗГ-ын 2013 оны 320 дугаар журам[「몽골국 외교여권과 귀국 증명서 발급, 소유와 보관 규정」-2013년 320호 정부 규정].

Монгол Улсын тогтвортой хөгжл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2030-УИХ-ын 19 дүгээр тогтоол, 2016.02.05[19호 국회령-「몽골국 안전적 개발 개념-2030」, 2016.02.05].

Монгол Улсын хөгжлийн үзэл баримтлалыг батлах тухай-УИХ-ын 26 дугаар тогтоол, 1996.03.26[26호 국회령-「몽골국 개발 개념을 제정하는 것에 관하여」, 1996.03.26].

Монголын Эдийн засгийн шинжилгээ, судалгааны төв, "Эдийн засгийн хямрал болсон

уу, эсвэл болох уу?” Цуврал#2, 2015 оны 3 сарын 29-ний өдөр, http://mearc.mn/r/26.
Нэмэгдсэн өртгий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хууль/Шинэчилсэн найруулга/, 2015.07.09[「부가가치세법(개정법)」, 2015.07.09].
“Орхон, Дархан-Уул аймгийн үйлдвэрлэл, технологийн паркийн удирдлагуудтай гэрээнд гарын үсэг зурлаа”, 2015 оны 2 сарын 5-ны өдөр, http://mi.gov.mn/250.html.
“‘Сайдын цаг’ уулзалт, Аж үйлдвэрийн сайд Д.Эрдэнэбат”, 2015 оны 3 сарын 26-ны өдөр, https://www.youtube.com/watch?v=FOfjmKz4O1o.
Т. Ану, “Массачусетсийн технологийн институтитэй хамтарна”, 2015 оны 5 сарын 15-ны өдөр, http://www.news.mn/content/212472.shtml.
Технологи дамжуулах тухай хууль, 2015.07.09[「기술이전법」, 2015.07.09].
Төрийн болон орон нутгийн өмчийн хөрөнгөөр бараа,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далдан авах тухай хууль, 2015.07.09[「정부와 지방정부 소유자금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법」 2015.07.09].
Төрөөс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о, 2015.06.19[「국가산업정책」, 2015.06.19].
Төрөөс аж үйлдвэрийн талаар баримтлах бодлогыг хэрэгжүүлэх дунд хугацааны стратеги(2015-2020 он), 2015.10.05[「국가산업정책 시행 중기전략(2015-2020년)」, 2015.10.05].
Үйлдвэржилтийг эрчимжүүлэх талаар Засгийн газарт чиглэл өгөх тухай-Монгол Улсын Ерөнхийлөгчийн 2015 оны 9 дугаар зарлиг, 2015.01.29[「산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정부에 지시를 내리는 것에 관한 대통령령」, 2015년 9호 대통령령, 2015.01.29].
Үйлдвэрлэлийг дэмжих тухай хууль, 2015.07.09[「생산지원법」, 2015.07.09].
Ц.Гэрэлчимэг, “Монгол-Германы хамтарсан дээд сургууль ирэх намраас элсэлтээ авна”, 2013 оны 5 сарын 9-ны өдөр, http://www.meds.gov.mn/post1305093.
Ч.Болор, “Монгол Жинчин брэнд бий болгоё”, 2015 оны 5 сарын 4-ний өдөр, http://www.news.mn/r/208797.
“Чингис бонд ба үйлдвэржилт 2, 3”, https://www.youtube.com/watch?v=clubUmti6zY.
“Эдийн засгийн хүндрэлийг даван туулах арга хэмжээний тухай”, УИХ-ын тогтоолын төсөл, 2014 оны 12 сар.
Э.Лхамзаяа, “Өөрөө зохион бүтээдэг, шинийг санаачилдаг инженер болоорой”, 2016 оны 1 сарын 28-ны өдөр, http://www.meds.gov.mn/post160128.
“Эрдэнэт үйлдвэрлэл, технологийн парк хөрөнгө оруулагчдын чуулган”, 2015 оны 10 сарын 10-11-ний өдөр, https://www.youtube.com/watch?v=82OCuIBPI5w.

〈한국어 자료〉

드.바트토그토흐 몽골산업부 전략기획국 국장, 몽골 진출환경 세미나, 2016년 3월 25일, 리츠칼튼 서울.
브.바트채책 몽골산업부 경공업 정책조정국 수석 전문가, 2016년 5월 20일, 전화 인터뷰.
스.남질마 몽골산업부 산업개발정책 조정부서 수석 전문가, 2016년 5월 5일, 전화 인터뷰.
제성훈·이재영·강부균·윤지현, "수교 25주년, 한·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5권 제9호(2015).
KOICA, 협력단 실적 통계, http://stat.koica.go.kr:8077/komis/jsptemp/ps/stat_index.jsp.

KDI, “몽골 KSP 성과 추적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안)”, 2015년 3월.
Korea ODA, 한국의 ODA 지원현황,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2/T02/asia/Mongolia.jsp.
KSP, http://www.ksp.go.kr/kr/publication/joint.jsp?sage=&stem=&syear=&stype=TIT&skey=%EB%AA%BD%EA%B3%A8.
NIIED, GKS 장학사업-기획관리부 유학지원단 담당자 제공 자료, 2016년 4월 17일.

〈표 3〉「국가산업정책 시행 중기전략(2015-2020 년)」: 목표와 조치들

목적	목표	목표 범위 이내에서 취할 조치들
I 단계(2015-2020년): 국내 생산을 보호하고, (생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하고 기계장비와 기술을 현지화시키며 수출지향 및 수입대체 산업정책을 시행한다.	1. 생산과 무역을 지지하고, 생산과 무역에 대한 호적인 법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	생산과 무역을 지지하는 법률을 새로이 작성하고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것; 무역에 대한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관세 및 비관세 조정을 국제조약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 등
	2. 산업개발 종합지대와 그 공간 기준을 정의하고 공장들의 위치와 용량을 확정하는 것.	'산업개발 종합지대'를 확정하고 제정하게 하는 것; '산업개발 종합지대'와 연관지어 공장들의 위치와 용량을 확정하는 것 등
	3. 지역 제조업 우선순위 분야들을 확정하여 제조업을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 클러스터, 자유지대와 생산기술단지를 그 인프라와 함께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개발하는 것.	철과 구리, 이들로 만든 제품 및 코킹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석유가공, 구리 용해와 금 제련 공장들을 건설하는 일을 개시하는 것.
		공공 교통수단, 기계장비 부속품, 광업과 농축산업 기계장비 생산을 클러스터로 개발시키는 것
		경공업을 클러스터로 개발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경공업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것
		농축산업 원자재 품질과 공급 제도를 개선시켜 친환경 기술에 기초한 수출지향적인 제품 생산을 개발시키는 것
		제조업 분야 운송과 로지스틱 네트워크를 개발시키는 것
		자유지대, 생산기술단지, 과학기술단지와 중공업 단지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건설하는 사업들을 지지하는 것.
	4. 선진 기계장비와 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가공 및 재가공 공장들을 재정정책으로 지지하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	정부, 과학기관, 교육기관과 기업들의 협력을 지지하고 수출지향적이며 혁신적인 제품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 등
	5. 지식경영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창의적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능력,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국가 역사와 문화가 담긴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 등
	6. 제조업 인력 수요에 기반하여 인력을 양성하는 것.	기술자와 전문가를 양성하고 능력을 키우는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 등

출처:「국가산업정책 시행 중기전략(2015-2020년)」, 3. 전략의 목적 및 목표, 4. 전략 목표 범위 이내에서 취할 조치들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표 4〉「국가산업정책」에 따른 법령과 규정의 변경

	법령과 규정 이름	제정 일자	관련 조항들	내용	국가산업정책 이전
1.	「생산지원법」(제정)	2015.07.09	제3장 8.1	생산한 제품의 3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에게 기술개선에 대한 투자와 유동자본 마련 목적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자율 차이에 해당되는 금액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
				고수익의 선진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하며 현지화시킨 수출 제품생산업체에게 동 제품을 생산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75%에 해당되는 금액의 지원금을 정부 예산에서 1번 제공한다.	-
				수출 생산을 수출지원 각종 수단, 그 중에서 팩토링 서비스를 개발시키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
			제 3 장 8.2	본 법 8.1 에서 정한 지원을 생산개발기금을 통하여 제공한다.	-
2.	「정부와 지방정부 소유자금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에 관한 법」(수정)	2015.07.09	제1장 10[1]	품질과 표준 요구기준을 충족시킨 상품을 국내 생산업체들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을 경우에 입찰에서 외국산 상품을 공급하는 자를 선발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정부가 국내 생산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질과 표준 요구기준을 충족시킨 상품 목록을 작성한다.	-
			제 7장 57.1.4.	제1장 10[1]을 어긴 구입자의 예산책임자, 상무이사와 이사에게 최저 임금의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
	336호 정부령-「국내 생산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는 품질과 표준 요구기준을 충족시킨 상품 목록」	2015.08.17	-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질 요구기준을 충족시킨 12개 상품군의 101가지 상품	-
3.	74호 국회령-「수입품 관세율을 제정하는 것에 관하여」(국회령 27호)(수정)	2015.07.09	-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30개 상품군의 370가지 상품의 수입관세율을 20 퍼센트까지 인상시킬 권리를 몽골 정부에 부여한다.	-
	332호 정부령-「일부 수입상품의 관세율」	2015.08.17	-	5개 상품군의 13가지 상품의 수입관세율을 15-20 퍼센트까지 인상시킨다.	5 퍼센트
	185호 정부령-「일부 수입상품의 관세율」	2016.03.28	-	14개 상품군의 48가지 상품의 수입관세율을 15-20 퍼센트까지 인상시킨다. - 2가지 상품: 6.5 퍼센트, 5가지 상품: 10 퍼센트	5 퍼센트
4.	「부가가치세법(개정법)」(수정)	2015.07.09	제 5 장 12.1., 12.1.7.	수출된 다음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영(0)이다: 광물, 울, 캐시미어와 가죽으로 만든 최종 제품	광물, 가죽

			제 7 장 14.1.4.	농축산업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과 업체가 스스로 준비하거나 재배한 생산 초기 단계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울, 캐시미어, 육류, 계란, 가죽, 감자, 채소, 과일과 국내에서 생산한 밀가루를 국내 생산업체들에게 판매했으면 그 가격에 10 퍼센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이 물건들을 구입한 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은 퍼센트로 감면하여 각각 계산한다.	육류, 계란, 가죽, 감자, 채소, 과일, 밀가루
5.	「정부 특별기금법」(수정)	2015.07.09	제 2 장 5.4.38	정부특별기금과 그 종류: 생산개발기금	-
			제 2 장 6.2.11.	특별기금 분류: 생산개발기금	-
6.	「기술이전법」(수정)	2015.07.09	제1장 6.1.2.	기술수준평가기관에 해당문제담당 국가행정중앙기관과 공동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
			제2장 7.7	기술수준평가 규정과 평가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해당 문제담당 국가행정중앙기관이 정한다.	
7.	「몽골국 외교여권과 귀국 증명서 발급, 소유와 보관 규정」-2013년 320호 정부 규정(수정)	2015.07.?	?	「생산지원법」에서 정한 조건과 요구를 충족시킨 공장의 상무이사에게 외교 여권을 발급한다.	-
8.	「무역법」안	국회에 제출되었음.	-	11장 35항으로 구성됨. 국내 생산을 무역 비관세 제한으로 인하여 지지하는 것, 수출 산업을 정부 특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 등	-
9.	「덤핑법」안	국회에 제출되었음.	-	9장 40항으로 구성됨.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원산국보다 낮은 가격으로 몽골에 수입하고 판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 등	-

출처: 관련 법령과 규정 내용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표 7〉 한-몽 산업(제조업)협력 지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국가산업정책 이전(2015년까지)			국가산업정책 이후(2016년 이후)		
	사업	**내용**	**대상 분야**	**사업**	**내용**	**대상 분야**
1.	ODA	1) 무상 원조 (KOICA(1991-2013))	116개 사업: 공공행정(42), 농업(37), 보건(34), 교육(34), 기술·환경·에너지(16) 분야	ODA	1) 무상 원조 (KOICA)	- 제조업 분야 기계장비 기증 및 사업 추진(공여) - 전문가 파견 및 초청(기술 협력)
		2) 유상 원조 (EDCF→EXIM(1987-2013))	11개 사업: 정보통신(3), 의료시설(2), 에너지(2), 교통(1) 분야		2) 유상 원조 (EXIM)	- 클러스터, 생산기술단지와 자유지역의 onsite와 offsite 인프라 건설 사업 - 중경공업 부문 공장 건설 사업
2.	KSP	1) 국가정책자문사업 (KDI(2010-2013))	17개의 사업: 민간투자사업, 외환정책, 재정정책, 예금보험제도	KSP	1) 국가정책자문사업(KDI)	산업정책 자문 제공: -중공업 공장 및 기계장비 공장 건설 -경공업 클러스터 개발 -제조업 분야 인프라 및 로지스틱 네트워크 건설 -민간투자로 제조업 분야 개발 -사업가(entreprenuer), 신생기업 및 중소기업 개발 -몽골 산업정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정책 및 전략 관련 교육 실시
		2)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 사업 (EXIM & ADB(2013))	1개의 사업: 교통 분야		2)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 (EXIM)	제조업 분야에서 몽골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들과 공동으로 제조업 분야 개발 관련 컨설팅 제공
		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KDI School)	-		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DI School)	-한국의 중공업 개발 사례 및 중경공업을 클러스터로 개발한 사례에 기초한 모듈화된 자문 제공 -한국의 사업가, 신생기업과 중소기업 개발 사례에 기초한 모듈화된 자문 제공
3.	GKS	장학사업 NIIED(1991-2015)	284 명의 몽골 학생: 공학, 의학, 사회학, 인문학, 자연과학	GKS	장학사업(NIIED)	중경공업 분야 기술자와 전문가 양성

출처: 관련 자료(각주 6)와 '4.3 산업협력 지지 차원의 사업' 부분 내용에 기초하여 저자 작성.

부록 1. 산업개발 종합지대(초안)

5개의 지대, 12개의 부지대와 27개의 구역 목록

5개의 지대: 서부 지대, 항가이 지대, 중부 지대, 동부 지대, 고비 지대
12개의 부지대: 바양울기 부지대, 오브스-호브드 부지대, 고비알타이 부지대, 자브항-태스 부지대, 항가이-후브스굴 부지대, 움누드 항가이 부지대, 오르홍-셀렝개 부지대, 울란바타르 부지대, 헨티 부지대, 도르노드-수흐바타르 부지대, 고미숨베르부지대, 갈빙 고비 부지대
5개의 지대와 12 부지대에 해당되는 27 구역:

1. 알타이-다얀 구역
2. 울기-차강 노르 구역
3. 호브드 구역
4. 울기-차강 노르 구역
5. 다리브-우르니고비 구역
6. 알타이-샤르 구역
7. 볼나이-태스 구역
8. 올리아스타이 구역
9. 후브스굴 구역
10. 항가이 구역
11. 움누드 항가이 구역
12. 다르항-샤링골 구역
13. 알탕볼락-셀렝개 구역
14. 에르데네트 공장 구역
15. 울란바타르시 구역
16. 하라-수그누구르 구역
17. 토올 구역
18. 바양-바가노르 구역
19. 헤를랭-바양올랑-운두르항 구역
20. 이흐 헨티-배르흐 구역
21. 초이발상 구역
22. 바롱오르트 구역
23. 만달고비 구역
24. 초이르 구역
25. 도르노고비 구역
26. 움누고비 구역
27. 고르왕테스 구역

출처: 몽골산업부, http://industry.mi.gov.mn/ (검색일: 2016년 5월 20일)

부록 2.「수입품 관세율을 제정하는 것에 관하여」(74호 국회령)

수입관세율을 20 퍼센트까지 인상시킬 30개의 상품군 목록

1. 2- 육류와 유제품
2. 4- 계란
3. 7- 채소와 일부 식물의 뿌리
4. 8- 식용에 사용되는 과일, 땅콩, 오렌지와 멜론 껍질
5. 16- 육류와 생산, 해산물로 만든 식품
6. 19- 곡식; 밀가루, 곡분, 우유로 만든 조제물; 밀가루로 만든 제품
7. 20- 채소, 과일, 땅콩과 식물의 기타 부분으로 만든 조제물
8. 21- 각종 식용 조제물
9. 25- 소금; 유황; 흙 광물; 돌; 진흙 성분의 광물, 석고와 시멘트
10. 26- 유황, 제련물, 잔여물과 재
11. 35- 단백질 물질; 변화시킨 곡분; 풀; 효소
12. 39-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제품
13. 40- 고무와 고무 제품
14. 41- 양 가죽, 소가죽과 가공한 양과 소가족
15. 42- 가공한 양과 소 가족으로 만든 물건; 가공한 양 가족으로 만든 물건과 장식물; 여행용 물건; 여성용 가방과 비슷한 봉투; 동물 내장으로 만든 물건
16. 43- 털이 있는 가죽과 가공 털, 이들로 만든 물건
17. 48- 종이와 판지; 종이 펄프, 종이와 판지로 만든 물건들
18. 49- 책, 신문, 포스터와 출판 공장에서 사용되는 기타 제품, 활자체, 타이핑 마신으로 입력한 자료와 도형
19. 51- 울, 가축과 동물의 가늘고 굵은 털, 털과 강모로 만든 방적사와 이로 만든 직물
20. 56- 목화, 펠트; 털로 만든 줄과 이로 만든 물건들
21. 57- 카펫과 기타 직물 방석
22. 61- 니트로 된 옷과 니트로 만든 옷 장식물
23. 62- 바느질한 옷과 바느질한 것으로 만든 장식물
24. 63- 기타 니트로 된 물건들; 헌 옷과 니트 물건, 버려진 천
25. 64- 신발과 신발 목
26. 68- 돌, 석고, 시멘트, 석면, 리튬 운모와 이들과 비슷한 재료로 만든 물건들
27. 69- 도자기 물건
28. 70- 유리와 유리로 만든 물건
29. 87- 철도와 전기버스 철도 외의 기타 운송수단, 그들의 부품과 기계장비
30. 94- 가구: 침구와 메트래스, 이들과 비슷한 가정용 물건들; 조명; 조명 보드와 간판, 이들과 비슷한 물건들, 건축용 조립하는 물건들